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63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정호 · 박 정 · 윤후덕
이연희 · 김남희 · 서왕진
허종식 · 이수진 · 전진숙
박해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복적·누적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는 사고보다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유해요인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의6 신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기후위기(이하 “기후위기”라 한다)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의5. (생략) <u><신설></u> 6.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 -----. 1. ~ 5의5. (현행과 같음) 5의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u>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u> <u>제2조제2호의 기후위기(이하</u> <u>“기후위기”라 한다)에 따른</u> <u>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u> <u>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u>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 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 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 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분진, 병원체, <u>신체에 부담</u> <u>을 주는 업무</u>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 병 나. ~ 라. (생 략) 3.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체에 부</u> <u>담을 주는 업무, 기후위기</u> <u>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u>----- ----- ----- ----- ----- 나.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